

2015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I . 예비비 지출 현황

- 지 출 결 정 액 : 14억 8천 4백만원
- 지 출 액 : 13억 1천만원
- 이 월 액 : 해당없음.
-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 : 1억 7천 4 백만원
 -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률 11.7%가 발생하였음.

〈2015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 - ㉦ - ㉧ - ㉨ - ㉩
합계		1,483,650	1,309,893	1,309,893	-	173,757
서울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18,200	172,828	947	947	-	171,881
시립청소년 수련관 위탁 운영 지원	5,000	42,326	40,451	40,451	-	1,875
시립청소년 특화시설 위 탁운영 지원	0	1,268,496	1,268,495	1,268,495	-	1

II. 검토 및 의견

- 평생교육정책관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시설 운영 등을 위하여 총 3건에 14억8천4백만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고, 13억1천만원을 지출하여 1억7천4백만원을 불용(11.7%)시켰음.

< 2015 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합계		1,483,650	1,309,893	1,309,893	-	173,757
서울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	172,828	947	947	-	171,881
시립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42,326	40,451	40,451	-	1,875
시립청소년 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배상금등	1,268,496	1,268,495	1,268,495	-	1

가. 메르스관련 예비비 지출

- 평생교육정책관은 2015년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이하 '메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시설(예비)운영 및 구급장비 구입을 위하여 2개 사업에 총 2억1천5백만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였음.

< 메르스 관련 예비비 승인 내역 >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비비편성액
	계		216
1	평생교육담당관	서울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173
2	청소년담당관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43

※ 2015년 대한민국의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유행 요약.

- 2015.5.20. 바레인에서 귀국한 감염자가 확진 판정 후 확산.
- 정부의 대응의 문제 : 정보차단, 컨트롤타워 부재
- 서울시의 대응(6월4일) : 정보공개→정부방침과 충돌 (서울시:정보공개 VS 정부:혼란방지)
- 감염자는 6월8일, 격리자는 6월16일을 기점으로 감소추세.
- 7월28일 종식선언 시 사망자는 총 36명, 확진자는 총 186명.

1) 메르스 격리시설(예비) 운영(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 메르스 격리시설 운영을 위한 ‘서울영어마을 운영활성화’ 사업의 경우는 1억7천3백만원을 예비비 지출결정하여 1백만원만 지출하고, 1억7천2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p>※ 메르스 관련 격리시설 운영지정 통보 (문서번호 : 평생교육담당관-60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시설 지정개요 · 대상시설 :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 운영기간 : 2015.6.8.~운영 해제 시까지 - 조치 및 협조사항 · 즉시 프로그램 등 운영 중단 · 캠프 내 상황실 등 설치, 숙소동 정비 · 원어민 이동조치, 직원 비상근무 조치 <p>※ 메르스 관련 의료 및 시설 격리반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 료 진(서북병원소속) : 1일(15.6.9.), 2명 근무. - 시설격리반(방호실·상황실) : 17일(15.6.9.~25), 93명(12시간근무 75명, 8시간근무 18명) <p>※ 특근매식비 적용대상 : 정규근무 개시 2시간 전 출근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p>
--

< 메르스 격리시설지정 관련 예비비 산출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비비액	산 출 근 거
서울영어마을 운영활성화	172,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보호구 레벨D(3,120개*15,000원) 46,800천원 ◦ 3중 수송용기(150개*14,000원) 2,100천원 ◦ N95 마스크(2,700개*1,000원) 5,400천원 ◦ 일반마스크(840개*100원) 84천원 ◦ 라텍스장갑 (1,980개*150원) 459천원 ◦ 손세정제 (320개*15,000원) 4,800천원 ◦ 체온계 (75개*90,000원) 6,750천원 ◦ 치약, 타올, 손세정제 등 21,172천원 ◦ 식대(시직원, 10명*20,000원*30일) 6,000천원 ◦ 격리대상 피복비(75명*50,000*2벌) 7,500천원 ◦ 와이파이 설치 등 550천원 ◦ 격리대상 식대(75명*3식*30일*10,550원) 71,213천원

- 서울영어마을(수유캠프)이 인재개발원 격리시설의 수용인원 초과 시 메르스 추가격리시설(예비)로 지정되어 격리자 안전관리, 근무인력 운영 등 격리시설 준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예비비를 집행하기 위해 지출결정했으나,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아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처리(1억 7,188만원, 불용률 99.4%) 되었고, 일부 격리시설 지정에 따른 직원 예비 대기 근무 조치를 이유로 특근매식비(72만 9천원)와 운영소모품 구입비(21만 8천원)만 지출되었음.

< 메르스 격리시설지정 관련 예비비 지출 내역 >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계목명	지출결정액	지출건명	지출액	집행잔액
소계		172,828	4건	947	171,880
서울영어마을 운영활성화	사무관리비	172,828	메르스 격리시설 특근매식비 지급(6.23)	530	171,880
			메르스 격리시설 특근매식비 지급(6.23)	99	
			메르스 격리시설 운영 소모물품 구입(7.6)	218	
			메르스 격리시설 특근매식비 지급(7.16)	100	

- 격리시설로 실제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의 예비 대기(5명~8명 운영)를 위한 식대와 운영소모품 구입이 적정한지 여부와 예산외의 긴급한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2) 청소년시설 메르스 방역물품 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지원(사무관리비)’사업은 시립청소년 수련관 등 다중이용시설인 청소년 시설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구급장비 (일반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의 물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예비비 4천2백만원을 지출 결정한 후 4천만원을 집행하고 2백만원을 불용시켰음.

< 청소년시설 방역물품지원 관련 예비비 산출근거 >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15 본예산	추 가 소요액	산 출 근 거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지원(사무관리비)	5,000	42,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세정제(15천원×290개의 시설×8개) 34,800천원 ◦ 일반마스크(100원×종사자 2,652명×28개) 7,526천원

○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긴급구조, 구급장비 구입을 통해 추가적인 감염자 확산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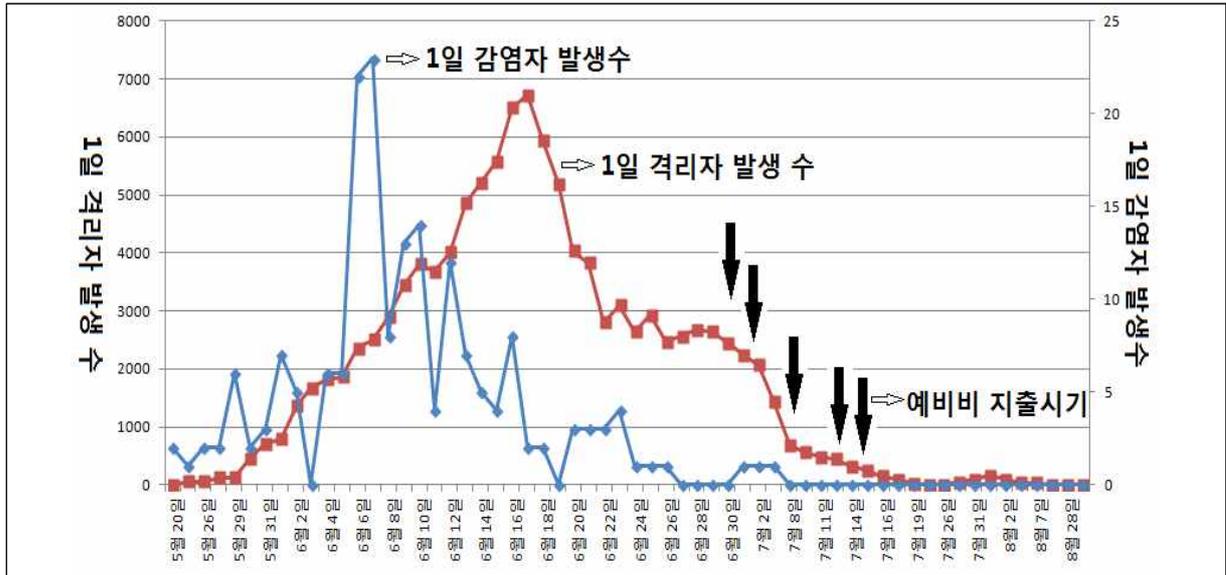
< 메르스 격리시설지정 관련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지출건명	지출액	지출일자	집행잔액
소계	42,326	5건	40,451		1,875
시립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42,326	메르스 방역용품 구매 (마스크,소독제)	9,601	2015.06.30	1,875
		메르스 방역용품 구매(마스크,소독제)	4,548	2015.07.02	
		메르스 방역용품 구매(마스크,소독제,체온계)	19,942	2015.07.08	
		메르스 방역용품 구매(마스크,소독제)	5,907	2015.07.13	
		메르스 방역용품 구매(마스크,소독제)	451	2015.07.14	

○ 다만, 메르스는 5월 중순에 시작되어 6월 중순 감소추세에 진입하기 시작 하였으나, 6월 4일 메르스 관련 서울시의 브리핑 이후 평생교육정책관에 ‘메르스 관련 예비비 사용승인 통보’(문서번호: 예산담당관-7079)가 6월8일 (문서번호:평생교육담당관-6010) 접수되고, 청소년시설 등의 방역물품관련 예비 비 집행은 6월 말에 시작되어 7월 중순에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점에서 당초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출이었는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위기상황 발생시 선제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메르스 관련 감염자·격리자 발생 및 예비비 지출 시기 >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수치를 그래프로 표시)

나. 근로청소년 복지관 변상금 납부관련 예비비 지출

- “시립청소년 특화시설 위탁운영지원” 중 ‘배상금’의 경우는 광명시에 위치한 근로청소년복지관이 국유지를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광명시가 변상금을 부과함에 따라 높은 연체료를 고려하여 변상금을 선납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12억6천8백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고, 12억6천8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2015 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시립청소년 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배상금등	1,268,496	1,268,495	1,268,495	-	1

< 광명시의 국유지점유 변상금 부과 내역 >

(단위:천원)

	부과부서	과목	부과금액(백만원)	납부기한
1	광명시 도로과	변상금 및 위약금	1,182,578	2015.1.30
2	광명시 재해방재과	변상금 및 위약금	85,908	2015.3.02
합계			1,268,486	

※ 근로청소년복지관 현황

- 소 재 지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740번지(개관:'82.12.17)
- 시설규모 : 대지62,301㎡, 건물25,295㎡(복지관5,565㎡/아파트19,730㎡)
 - 근로청소년복지관 : 지하2층, 지상3층(교육·연수·상담시설)
 - 여성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 9개동 450세대(1세대 2실, 현 450여명 거주)
 - 기 타 : 인조잔디 운동장, 다목적 운동장, 풋살구장, 골프연습장
- 위탁운영/기간 : (사)한국청소년연맹/'15.1.1~12.31('11년이후 1년 단위 재계약)

○ 서울시는 근로청소년복지관이 1970년대 구로공단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정부와 무상사용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취소처분을 요청하였으나, 광명시는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변상금 납부 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광명시는 서울시에 국유재산 사용료를 다시 부과함에 따라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음.

※ 광명시의 근로청소년복지관 변상금 및 사용료 부과경위

- 2013.12.03. 「근로청소년복지관 매각 추진 계획수립」(시장방침 제315호)
- 2014.07.31. 「근로청소년복지관 폐지 및 후속조치계획」 수립
- 2014.08.04.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관련 협의 발송(시→광명)
- 2014.10.27.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관련 협의 회신(광명→시)
- 2014.12.08.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광명→시) 및 의견제출(시→광명)
- 2014.12.23. 서울시 의견제출(처분취소 요청)
- 2014.12.30. 변상금 부과(광명시→서울시)
 - 국토부 소유 대지 1,525㎡, 부과금액 : 1,148백만원('15.1.30까지)
 - 국토부 소유 하천·구거 1,135㎡, 부과금액 : 86백만원('15.3.2까지)
- 2015.07.08.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결정(경기행심-436)
- 2015.08.24. 변상금 환급 고지수 송부(서울시→광명시)
- 2015.09.18.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광명시→서울시, 10억6천9백만원)
- 2015.10.16. 사용료 납부(서울시→광명시, 10억6천9백만원)
- 2015.12.21. 행정소송 제기(서울시→광명시)

- 집행부는 높은 연체료 부담(6개월 이상 연체시 연 15%)과 광명시와의 해당 국유지 매입 및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원활한 협의를 도모하고자 변상금 납입 후 적정성을 밝히고자 예비비로 먼저 집행하였는바, 향후 1970년대 근로청소년복지관의 정부와의 무상사용 협의사항 사실 입증 등 소송 승소를 위한 적절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지출된 예산의 회수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정찬일